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7월 2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서성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10-5221), 김응상 사무관(5222)		

규제개선으로 이런것이 달라졌어요
- 상반기 지식경제부 규제개선 실적 발표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금년도에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31개의 과제를 완료 하였음**(붙임: 규제개선 과제리스트)

○ 특히 금년도 상반기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환경 개선, 인증·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일반서류의 국제특송 허용**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모바일기기 문자입력 방식 표준 마련 등 **국민 생활편리성 증진에도 주력**하였으며, 주요 추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입지환경을 개선**

①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② 산업단지내 관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하향**(기존 1,650m^2이상 → 900m^2이상)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

③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며,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08.12.31 이전 설치)**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공장증설을 허용**

2 **유사 인증제도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검사·검정, 안전관리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기업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경영활성화 촉진**

④ **LED 조명 분야의 KS인증**(임의규정)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의무규정)의 **안전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KS인증 기간(1개월) 단축 및 비용(50%) 절감**

⑤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를 완화(2년→3년)**하여 주유사업자의 부담 경감

* 주유소 당 연간 평균 약 8만원의 경비절감

⑥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30일 → 20일) 및 기간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하여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⑦ 그동안 국제신서송달 규제로 묶여 있던 **일반서류에 대하여 국제특송을 허용**하여 한-EU FTA 협정이행 및 우편제도 선진화를 추구

- 국제서류의 신서송달 예외를, 현재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기술도입, 외국환 관련)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 **송달까지 확대**

3 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항에 대한 **생활·산업표준화**와 **계량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리성 제고

⑧ 민·관 합동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10.4)하여 시급성과 표준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가전제품 공용리모콘'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추진**('09년부터 '11.상반기까지 57개과제 발굴, 27개 과제 완료)

⑨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종류별 및 위반횟수별 차등)**하여 **국민부담 경감**

* 일률적 100만원 → 10~100만원

□ 앞으로도 지식경제부는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30건)**를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담완화와 편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임**

○ **한편, MB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촉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최근 **산업융합이 본격화**되고 **융합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것임**

※ 별첨 : 지식경제부 2011년 상반기 규제개혁 주요실적

별첨 1 지경부 2011년 상반기 규제개혁 주요실적

<총괄표>

과제명	시행시기	관련규정	내용
①대학의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입주 허용	'11.10.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22조의5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대학(일정요건 충족하는 경우) 입주자격 허용
②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	'11.7.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3 제1항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분할면적 제한 완화(1,650㎡ → 900㎡)
③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허용	'11.7.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2항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도로·하천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을 허용
④LED 조명제품의 KS 인증 간소화	'11.6.15	KS 인증심사기준 고시 개정	LED의 KS 인증시 전기용품안전인증(KC) 검사항목과 동일한 항목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
⑤주유소(주유기 및 LPG 미터) 계량기 검정주기 완화	'11.4.6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3	주유기 및 LPG미터의 점검주기를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⑥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 및 의제규정 신설	'11.3.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및 자동처리제도 도입(처리기간내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으로 봄)
⑦일반서류 국제특송 허용	'11.6.27	우편법시행령 제3조 제6호	일반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에 대한 국제특송 허용
⑧생활·산업 표준화	세부과제별 개별시행	KS산업표준 및 SPS 단체표준 개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산업분야 표준화 * 모바일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가전제품 공용리모콘 등 27개
⑨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완화	'11.4.6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7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계량기 종류별 및 위반횟수별로 세분화·차등화 (일률 100만원→10~100만원)

① 대학의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지역경제총괄과 김형석 사무관, 02-2110-5593)

□ **현황**

○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중 땅값이 비싼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가능하여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에 애로가 발생

□ **개선방향**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하여 일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자격을 부여

* 입주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현재 시행령 개정 진행중)

□ **기대효과**

○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로 산업단지 기업과 대학간 인력양성, R&D의 연계를 높여 고용 창출

□ **시행시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11.7.25 공포, '11.10.26 시행)

②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

(입지총괄과 오수만 사무관, 02-2110-5304)

□ **현황**

○ 관리권자·관리기관·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를 분할하려는 경우 1,650㎡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

□ **개선방향**

○ 최소분할면적을 정하고 있는 이유(기반시설 보호 등)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기존 1,650m^2이상 → 900m^2이상)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 **기대효과**

○ 부지면적 1,650㎡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시행시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11.7.1)

③ 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허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태준 사무관, 02-2110-4713)

□ **현황**

○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활동의 애로 존재

□ **관련규정 등 정비현황**

○ '08.12.31일 이전에 설치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을 개정하면서,

○ 동법 시행령에서 공장 증설이 가능한 면적을 시설자동화 및 공정개선이 필요한 경우 3천제곱미터 이내로 허용(기타 불가피한 경우 1만2천제곱미터 이내)하여 기업애로 해소와 농업진흥지역 보존간의 균형 달성

□ **기대효과**

○ 농업진흥지역 및 도로·철도 등으로 장애를 받았던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시행시기** : 기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11.7.14)

④ LED 조명제품의 KS인증 간소화

(신산업표준과 구창환 연구사, 02-509-7295)

□ **현황**

○ LED 조명 등 핵심 신기술의 경우 기술변화가 매우 빠르며, 글로벌 시장의 신속한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나 현행 KS인증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KC 인증) 검사항목의 50%이상이 중복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개선방향**

○ LED 조명의 경우 같은 평가항목을 인정해줌으로써 중복시험에서 비롯되는 인증시간과 비용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인증절차를 간소화

□ **기대효과**

○ KS인증심사시 KC 인증의 안전성관련 시험 항목이 면제됨에 따라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대폭 경감되고,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 개월에서 1 개월로 단축됨

* 시험수수료 280 ~ 350만원 → 100 ~ 150만원(50 ~ 70 % 절감)
* 시험기간 : 약 2 개월 → 1 개월 이내 (50 % 단축)

□ **시행시기** : KS 인증심사기준 고시개정 시행('11.6.15)

⑤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 완화

(계량측정과 김준호 연구관, 02-509-7231)

□ **현황**

○ 계량기의 정확성과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는 최초검정 후 2년마다 검정을 실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검정), 동법 시행령 제21조(검정) 등

□ **개선방향**

○ 주유기 및 LPG미터의 기술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검정 주기를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완화

* 정기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연중단속을 강화

* 또한, 시군구는 수시단속 강화를 통해 정확한 계량값이 유지되지 않는 주유기 등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 등 감독을 강화

□ **기대효과**

○ 주유소 당 연간 평균 약 8만원의 경비절감 효과 발생

- 주유소(경유, 휘발유 등) 12,300여개, LPG 충전소 7,000여개

□ **시행시기**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3) 개정 시행('11.4.16)

⑥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 및 의제규정 신설

(석탄산업과 곽진철 사무관, 02-2110-5497)

□ **현황**

○ 지식경제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 내용을 관계부처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개선방향**

○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기간 단축(30일 → 20일)

○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봄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및 자동승인 제도 도입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도모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불만 해소

* 광해는 오염성, 지속성, 축적성, 확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적기에 광해방지사업을 시행치 못할 경우, 오염지역 확대와 오염도 증가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 초래

□ **시행시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11.3.30)

⑦ 일반서류 국제특송 허용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김영일 사무관, 02-2195-1212)

□ **현황**

○ 국제서류의 신서송달 예외를 적용하여 현재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기술도입, 외국환 관련)에 대해서는 국제특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서류에 대해서는 불허

□ **개선방향**

○ 일반서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에 대한 국제특송을 허용

* 관련조항 : 우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외국과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

□ **기대효과**

○ 한-EU FTA 협정사항 이행

○ 우편독점의 완화를 통한 우편제도 선진화 추구

□ **시행시기** : 우편법 시행령 개정 시행('11.6.27)

⑧ 생활 · 산업 표준화

(표준기획과 박현영 연구사(총괄), 02-509-7260)

□ **현황**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분야 표준화 미비로 **국민 불편**은 물론 **사회적 낭비** 및 **산업집중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사례 1) 휴대폰용 배터리의 표준화 미비에 따른 제품간 호환성 부재로 소비자 부품교환 애로 및 관련 부품산업의 이중적 비용지출

* 사례 2) 요식업 1인분 표준화 부재로 소비자 권익 침해

□ **개선방안**

○ 『**생활표준 국민제안**』 사이트를 통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생활산업 표준화 과제를 발굴

○ 민·관 합동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국민제안 발굴과제의 **시급성**과 **표준화 효과** 등을 검토,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표준화 추진**

- '09년부터 '11.상반기까지 57개 과제 발굴 표준화 추진

- 현재까지 27개 표준화 완료,(상반기 6개 완료, 하반기에 12개 완료 예상)

* 주요 완료과제 : 전국호환 교통카드, 결혼식장 서비스 인증제 도입, 매운맛 등급, 세제 적정량 사용표준, (이하 '11.상반기 실적) 휴대폰 배터리, 모바일 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차량 블랙박스,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소형전자제품 통신테이블, 가전제품 공용리모콘 등

○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한 **기업의 표준이행 촉진**

□ **기대효과**

○ 국민관심도가 높은 생활표준화 과제의 성공을 통하여 **표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국민 불편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사례) 공용 리모콘 사용으로 1개당 연간 875억 절감(리모콘 개당 5천원 기준 1,715만 가구수('10년 통계청자료) 환산)

○ 표준화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이중적 투자비용 절감**

□ **시행시기** : KS 산업표준 및 SPS 단체표준 개정(과제별 시행)

⑨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완화

(계량측정과 김준호 연구관, 02-509-7231)

□ **현황**

○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부과

□ **개선방향**

○ 과태료 부과기준을 계량기 종류·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차등화 하여 합리적으로 개선(10~100만원 부과)

□ **기대효과**

○ 세분화·차등화된 과태료 적용으로 과태료 부담 경감 및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

※ 일률적 100만원 → 10~100만원으로 차등화

□ **시행시기**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7) 개정 시행('11.4.16)

별첨 2 지경부 2011년 규제개혁 과제 리스트

연번	과제명	시행시기	조치사항	내용
1	대학의 산업시설 입주 허용	10.26	산집법 개정	산업시설구역에 대학 입주 허용
2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개선	6.24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업무규정 개정(고시)	태양광 모듈인증 등 인증절차 간소화
3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5.2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공포)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제도 운영체계 통합으로 편리성 제고
4	주유소(주유기 및 LPG 미터) 계량기 검사주기 완화	4.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점검주기 완화 (2년→3년)
5	설치신고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중 성능검사면제	3.15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고시)	안전검사와 중복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검사 면제
6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의 검사면제 범위 확대	3.15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고시)	검사면제 보험금 약정액 하향(500억원→400억원)
7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	3.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승인기간 단축 (30일→20일)
8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자동 인·허가 도입	3.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20일내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 승인
9	주유소 옥외광고물의 표기 및 설치방법 개선	6.30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고시)	석유류 표시방법 등 합리화
10	에너지 진단주기 관련 인센티브 확대	3.1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유공자(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단체표창) 면제기간 연장(3년→5년)
11	친에너지형 시설 최초 설비시 첫 진단 면제	3.1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에너지사용량의 30% 이상인 경우 친에너지형 설비인 경우 첫진단 면제
12	압력용기 동시검사제도 개선	4.5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공포)	여러개의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시기를 동시에 하도록 신청가능
13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변경	4.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	토지수용재결의 관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일원화
14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 등록시 검사설비기준 완화	1.1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업체상황을 고려하여 설비기준 차등화
15	형식승인된 계량기 사후관리 처분기준 완화	1.1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승인후 결함에 대한 조치 차등화(일률 취소→경미한 경우 시정조치 등)
16	봉인재료의 납사용금지 및 검정증인 표시위치 범위확대	1.1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표시위치 지정 및 확대 등 합리화

연번	과제명	시행시기	조치사항	내용
17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의 증설 허용	4.14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공포)	농업진흥지역내로의 공장증설 허용
18	계량기 형식승인유효기간 폐지	4.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형식승인 유효기간 폐지
19	기준기 검사유효기간 조정 등	4.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검사주기 차등화 (2년→2~4년)
20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범위 조정	4.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체중계 등 비상업용의 경우 형식승인 제외
21	형식승인 면제 대상 추가	4.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의료기기법(6조등)에 따른 혈압계, 체온계 등에 대한 중복승인 면제
22	연구개발부담금 가산금 차등부과	4.5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공포)	납부기간 1주일 이내의 경우 가산금에서 완화 (기존가산금의 1/3 수준)
23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	5.18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첨부서류 감축
24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완화 기간제한 폐지	3.30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	벤처기업의 인적요건 완화 고착(한시 규정 폐지)
25	과태료 부과금액의 위반횟수별 차등화	4.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과태료 세분화차등화
26	대덕특구 입주 제한업종 완화	5.17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고시)	도금, 도장 등 유해 배출업종 입주허용
27	열생산시설 허가대상 축소	3.30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공포)	허가면제 범위 확대
28	LED 조명제품 등 전기용품 인증절차 간소화	6.15	KS인증심사기준 개정(고시)	KS 인증시 전기용품 안정인증과 동일 시험항목 결과를 그대로 인정
29	저울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완화	4.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과태료 기준 세분화 차등화 (100만원→10~100만원)
30	국제특송 서류송달 개방	6.30	우편법 시행령 개정(공포)	일반서류 국제특송 허용
31	산업단지 분할면적 완화	7.1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650㎡ → 900㎡